

의안
번호

337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0. 18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37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0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0. 15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금액 수정(안 제2조 관련 별표)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"에서 "3,000원"으로 금액 명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08. 22. ~ 2024. 09. 11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총리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2023. 11.22. 개정되어 2024.11.23.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제2항 관련 [별표]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, '금액'란에 "3,000원"을 명시한 것으로
기존 조례상 '금액'란에 “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”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, “3,000원”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

※ 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(수수료) :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
(개정 전)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.
(개정 후)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